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611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8342호

시행일자 2016. 1. 14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66(2016. 1. 12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3호, 2016.1.12)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,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 개정 내용]

-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

붙임: 개정고시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